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48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4	유영하의원 등 12인	2024. 8. 1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2208266	강준현의원 등 13인	2025. 2. 19.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4. 28.)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2208401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 2. 25.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4. 28.)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2208983	김상훈의원 등 15인	2025. 3. 17.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는 위 4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5. 1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제조와 자산운용만 담당하고, 상품판매는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자회사형의 보험대리점을 두어 보험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면서 법인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이러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재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신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 보험중개사의 임원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을 추가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척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안 제84조, 제87조의 2, 제89조의2 등).
- 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 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금융관계법률”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제84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7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관계법률”로 한다.

제8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계법률”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계법률”로 한다.

제102조의2 중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9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8조제3항, 제90조제3항 및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나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0. (현행과 같음) 21. “ <u>금융관계법률</u> ”이란 「 <u>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u> 」, 「 <u>보험사기방지 특별법</u> 」, 「 <u>형법</u> 」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 <u>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u> 」 등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 2. (생 략) 3. 이 법 또는 「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u>금융관계법률</u> ----- ----- ----- ----- -----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융관계법률---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 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 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 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관계법률---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 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신설>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 3. (생략)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

③ -----

-----.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의 자격)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관계법률---

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략)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 3. (생략)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략)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5년-----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관계법률-----

②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

<삭 제>

<삭 제>

<u>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u> 제196조(과징금)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 (생략)	제196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